고등교육평가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6. 11.
개정 2018. 02.
개정 2020. 02.
개정 2020. 06.
개정 2023. 10.

제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'본 대학'이라 한다) 고등교육평가센터(이하 '본 센터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 센터는 대학의 자체평가 연구 및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고등교육 핵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
1.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체제혁신
2. 대학 자체평가 진단과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질 관리 및 개선
3. 대학 장·중·단기 발전 비전에 부응하는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과 진단 및 메타평가를 통한 환류시스템 운영, 개선
4. 대학교육 관련 국내외 데이터 정보수집·분석·평가를 통한 대학교육 질관리 및 기획·평가·개선
5. 대학 성과(IR) 및 학생 교육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, 연구를 통한 지속적 질 관리 및 개선
6. 기타 고등교육정책 관련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제반 연구

제3조(센터장) ①센터장은 본 대학 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3조의2(조직) ①본 센터에는 상설조직으로 통계분석팀과 IR성과관리팀을 두고, 비상설조직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통계분석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다음 각 호에 관한 대학의 설문조사 및 통계 관련 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종합 보고하고 환류에 반영하기 위한 업무
   가. 대학발전계획 관련 사항
   나.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관련 사항
   다. 자체평가 관련 사항
2.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③IR성과관리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대학 성과(IR) 및 학생 교육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운영 업무
2. 교내 부처 및 정부재정지원사업단 성과관리 체계 및 지표점검 업무
3. 대학의 순환적 질관리 시스템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안을 진단하여 환류에 반영하는 업무

④본 센터에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팀장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연구원 및 보조연구원) ①본 센터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.

③보조연구원은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) ①본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자체평가위원회) ①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체계 및 조직운영 전반을 포함한 학교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대학교육의 수월성, 효율성, 책무성, 자율성, 협동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업무를 수행한다.

②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 지표 영역 및 항목별 연구위원을 두고 각각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자체평가 기획 및 운영
2. 대학평가 업무 수행
3. 대학자체평가보고서 영역별 수집자료 목록 작성 및 분석, 평가
4. 자체평가 보고서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발전위원회 보고 및 대학교육 개선의 총장 자문 및 보좌 등 위 각 호에 연관되는 사항 등

③자체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, 정기평가는 1년에 1회, 수시평가는 고등교육평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한다.

④자체평가의 범위, 영역, 지표 등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.

⑤자체평가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,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대학 교직원 중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.

제7조 (운영) 센터장은 본 평가센터의 주요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총장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 (운영세칙)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본 평가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전부 개정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